



자격심사 수련서류 작성 요령

유의사항

1. 본 작성요령은 각 급수별 자격규정 안내문이 아닌 수련서류 작성 시 자주 문의주시는 부분과 작성시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수련서류 작성 이외의 서류제출 요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드시 지원하시는 자격 급수 별 **자격규정**을 사전에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2020년 하반기부터 목회/기독교상담사 자격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지원 전 변경된 자격규정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수련서류들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기에 이점 혼동없으시길 바랍니다.
4. 자격관련 문의사항은 협회 이메일(kapca@hanmail.net)또는 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
▶ 전화 가능시간: **평일 10:00 ~ 14: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기타 서류제출 안내

1. 코로나19로 인한 수련서류 관련 안내

본 협회 규정자격위원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면대면 수련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자격서류 제출에 필요한 수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사항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된 개인 상담, 개인 수퍼비전, 집단 수퍼비전, 수련 수퍼비전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 음성통화로 진행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목회/기독교 상담 자격취득자가 위기상담사 자격취득시 중복서류 제출가능

위기상담사와 목회/기독교상담사 동일급수 지원의 경우, 아래의 서류에 한하여 선취득한 자격급수 취득 시 제출했던 서류로 재제출 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재제출 유효기간은 선자격 취득 후 3년 이내로 제한한다.)

◎ 재제출 허용 서류

개인상담증명서, 상담경력증명서, 개인수퍼비전증명서, 집단수퍼비전 증명서, 상담사례보고서, 발표확인증
단, 임상사례모임/ 학술대회 참가 확인증의 경우 재제출을 불허하며 선취득한 자격 급수시 제출했던 서류의 감독 서
명 유효는 위기상담사자격 지원 년도의 당해 연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한국목회상담협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임상수련교류

- ▶ 2019년부터 한국목회상담협회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의 임상수련 교류가 시행되었습니다.
- ▶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감독의 임상수련 시간은 수련분야별 전체 수련시간 중 3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감독에게 받을 수 있는 범위

자격명	인정범위
감독	수련수퍼비전 30시간 중 9시간
전문가	개인 수퍼비전 60시간 중 18시간 / 집단수퍼비전 60시간 중 18시간
1급	개인 수퍼비전 30시간 중 9시간 / 집단수퍼비전 30시간 중 9시간

▣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전과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 임상수련 시간 중 30%까지만 인정

▣ 개인수퍼비전은 1주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

집단수퍼비전은 3인 이상 모인 그룹 수퍼비전으로 정의함.

수련수퍼비전은 감독 자격 취득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

▣ 양학회 감독 교류는 2019년부터 받은 수련시간에 한함. (소급적용 안됨)

▣ 놀이아동상담사 감독에게 받은 수련시간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재공지 예정.

▣ 개인상담증명서는 해당사항 없음.

*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감독의 서명을 받을 시 자격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한국목회상담협회 수련서류 작성 요령

1. 개인상담증명서

- 1) 1대1 개인상담을 원칙으로 함.
- 2) 상담시간은 1시간으로 함.
- 3) 전문가, 감독의 성명과 직인 및 직접서명이 매 상담 시간마다 들어가야 함.
- 4) ○ 표시된 부분은 성명과 직인 또는 직접서명이 함께 들어가야 함.
- 5) 시간 및 장소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 시 수정 부분에 해당 전문가, 감독의 서명을 받아야 함.

1-1. 개인상담증명서 서류 양식

개인상담 증명서

제 대	상담 날짜	년 월 일 ~ 년 월 일	
	상담 일자	장소	전문가/감독 성명(사명)
제1	2009년 1월 2일 (화요일)	한국복지상담협회 센터	김복000 (국민) 조는(이영)
제2	2009년 1월 10일 (금요일)	한국복지상담협회 센터	김복000 (국민) 조는(이영)
3	{ 시간 }		
4	{ 시간 }		
5	{ 시간 }		
6	{ 시간 }		
7	{ 시간 }		
8	{ 시간 }		
9	{ 시간 }		
10	{ 시간 }		
11	{ 시간 }		
12	{ 시간 }		
13	{ 시간 }		
14	{ 시간 }		
15	{ 시간 }		
16	{ 시간 }		
17	{ 시간 }		
18	{ 시간 }		
19	{ 시간 }		
20	{ 시간 }		
21	{ 시간 }		
22	{ 시간 }		
23	{ 시간 }		
24	{ 시간 }		
25	{ 시간 }		
26	{ 시간 }		
※ 미시간 기입			

본문은 자격증자위원회에 제출되며, 사본은 개인상담 감독자와 본인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상담을 통하여 청중관 축면(본인작성)

자신이 앞으로 더 적용해야 할 부분(본인작성) :

전문가/감독 상당가족 치연:

- 최종 상당가족 치연과 차원시연 및 날인이 되어있어야 인정됩니다.

전문가 / 감독 : _____ (서명)

2. 개인수퍼비전 증명서

- 1) ○ 표시된 부분은 성명과 직인 또는 직접서명이 함께 들어가야 함.
- 2) 전문가에게 서명을 받을 시, 전문가를 수퍼비전 해준 감독의 서명이 ○ 표시된 부분에 함께 요구 됨.
- 3) 수퍼비전마다 작성해야 하며(개인수퍼비전 세부내역별로 작성), 각 전문가, 감독자별로 작성해야 함. 즉, 증명서의 상담한 사례내용과 지도감독 받은 내용과 개인수퍼비전 세부내역과 동일해야 함.
- 4) 개인수퍼비전 구성원은 2인까지 가능함.
- 5) 1주에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6) 해외에서 받은 수퍼비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감독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2-1. 개인수퍼비전 증명서 서류양식

개인수퍼비전 증명서

성명	개인수퍼비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설명: 관리자이며, 개인수퍼비전 대표입니다.	
이 서류는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날짜: 2024년 01월 01일	

개인수퍼비전 증명서

이 서류는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날짜: 2024년 01월 01일

개인수퍼비전 증명서

이 서류는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날짜: 2024년 01월 01일

개인 수퍼비전 세부 내역

번호	상세 항목	증명내용	날짜
1	1. 개인	본인(임직·직원)	
2	2. 개인	본인(임직·직원)	
3	3. 개인	본인(임직·직원)	
4	4. 개인	본인(임직·직원)	
5	5. 개인	본인(임직·직원)	
6	6. 개인	본인(임직·직원)	
7	7. 개인	본인(임직·직원)	
8	8. 개인	본인(임직·직원)	
9	9. 개인	본인(임직·직원)	
10	10. 개인	본인(임직·직원)	
11	11. 개인	본인(임직·직원)	
12	12. 개인	본인(임직·직원)	
13	13. 개인	본인(임직·직원)	
14	14. 개인	본인(임직·직원)	
15	15. 개인	본인(임직·직원)	
16	16. 개인	본인(임직·직원)	
17	17. 개인	본인(임직·직원)	
18	18. 개인	본인(임직·직원)	
19	19. 개인	본인(임직·직원)	
20	20. 개인	본인(임직·직원)	
21	21. 개인	본인(임직·직원)	
22	22. 개인	본인(임직·직원)	
23	23. 개인	본인(임직·직원)	
24	24. 개인	본인(임직·직원)	
25	25. 개인	본인(임직·직원)	
26	26. 개인	본인(임직·직원)	

3. 집단 수퍼비전 증명서

1) ○ 표시된 부분은 성명과 직인 또는 직접서명이 함께 들어가야

함.

2) 최소 2인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받되, 감독1인에게 15시간까지 인정한다.

3) 임상목회훈련 1 Unit은 집단수퍼비전 시간으로 최대 5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본 협회의 임상사례모임 참석은 회당 2시간을 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임상사례참석확인증과 중복인정 가능)

5) 집단 수퍼비전은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6) 1주에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7) 해외에서 받은 수퍼비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감독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집단수퍼비전 증명서 세부 내역

생 대	장 달 날짜	년 월 일 ~ 년 월 일
상 달 일자	장 소	감 독 성 명(사인)
1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5	(시간)	
6	(시간)	
7	(시간)	
8	(시간)	
9	(시간)	
10	(시간)	
11	(시간)	
12	(시간)	
13	(시간)	
14	(시간)	
15	(시간)	
16	(시간)	
17	(시간)	
18	(시간)	
19	(시간)	
20	(시간)	
21	(시간)	
22	(시간)	
23	(시간)	
24	(시간)	
25	(시간)	

4. 상담경력증명서 (자유양식)

1) 상담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따라 양

식이 상이함.

2) 상담경력증명서에 필수로 추가되어야 하는 부

분은 총 상담시간과 면접상담 시간임.(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시간으로 세분화

하여 기재하길 권장)

3) 발급기관 명칭과 기관 직인은 필수로 기재요

함.

4) 경력기관이 여러곳일 경우 모두 제출요함.

상담경력 증명서 (예시)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000센터 상담사로서 00년도 00월부터
00년도 00월까지 총00시간의 면접상담, 00시간의
집단상담을 하였으므로, 상담경력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직인)

5. 개인수퍼비전 시행 증명서 (자유양식)

1)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따라 양식

이 상이함.

2) 시행기관과 시행시간, 총시간 명시 필수.

3) 발급기관명과 직인 필수.

개인 수퍼비전 시행 증명서(예시)	
성명:	
생년월일:	
상기인은 본 기관의 수퍼바이저로 활동하면서 아래와 같이 개인수퍼비전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아래 —	
수퍼비전 시행 기간	수퍼비전 시행시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00시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00시간
총 계	000시간
발급년월일	
기관명 기관주소 및 대표자 명 (직인)	

6. 수련슈퍼비전 증명서

- 1) ○ 표시된 부분은 성명과 직인 또는 직접서명이 함께 들어가야 함.
- 2) 전문가 자격취득 후 25시간 이상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아야 함.
- 3)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반드시 개인으로 진행돼야 하며, 한주에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됨.
- 4) 수퍼비전 내용과 일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 5)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2명 이상의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받아야 하며, 1명에게는 반드시 15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 6) 각 감독별로 작성하여야 함.

※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

다른 상담자의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본 협회 감독에게 본인이 실시한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지도받는 수련을 말한다.

6-1. 수련슈퍼비전 증명서 양식

수련을 위하여 한 글입니다



수련을 위하여 한 글입니다
제작자: 김민수
제작일: 2023-06-01
제작장소: 원격수업
제작설명: 원격수업을 위한 글입니다.

김민수
2023-06-01

수련증명서 내용



김민수

수련 슈퍼비전 체부 파일

번호	첨부 파일	설명	설명
1	1_001		
2	2_001		
3	3_001		
4	4_001		
5	5_001		
6	6_001		
7	7_001		
8	8_001		
9	9_001		
10	10_001		
11	11_001		
12	12_001		
13	13_001		
14	14_001		
15	15_001		
16	16_001		
17	17_001		
18	18_001		
19	19_001		
20	20_001		
21	21_001		
22	22_001		
23	23_001		
24	24_001		
25	25_001		
26	26_001		
27	27_001		
28	28_001		
29	29_001		
30	30_001		
31	31_001		
32	32_001		
33	33_001		
34	34_001		
35	35_001		
36	36_001		
37	37_001		
38	38_001		
39	39_001		
40	40_001		
41	41_001		
42	42_001		
43	43_001		
44	44_001		
45	45_001		
46	46_001		
47	47_001		
48	48_001		
49	49_001		
50	50_001		
51	51_001		
52	52_001		
53	53_001		
54	54_001		
55	55_001		
56	56_001		
57	57_001		
58	58_001		
59	59_001		
60	60_001		
61	61_001		
62	62_001		
63	63_001		
64	64_001		
65	65_001		
66	66_001		
67	67_001		
68	68_001		
69	69_001		
70	70_001		
71	71_001		
72	72_001		
73	73_001		
74	74_001		
75	75_001		
76	76_001		
77	77_001		
78	78_001		
79	79_001		
80	80_001		
81	81_001		
82	82_001		
83	83_001		
84	84_001		
85	85_001		
86	86_001		
87	87_001		
88	88_001		
89	89_001		
90	90_001		
91	91_001		
92	92_001		
93	93_001		
94	94_001		
95	95_001		
96	96_001		
97	97_001		
98	98_001		
99	99_001		
100	100_001		

※ 사무국은 서류제출 전 서류검토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